

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
개인정보 보호법 이럴땐 이렇게



만화로 이해하는
개인정보보호,
재미도 UP!
지식도 UP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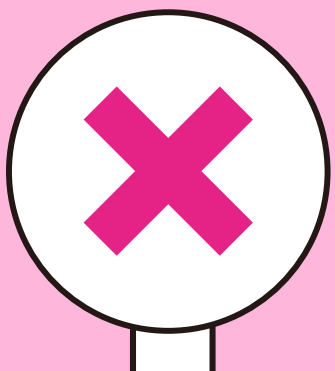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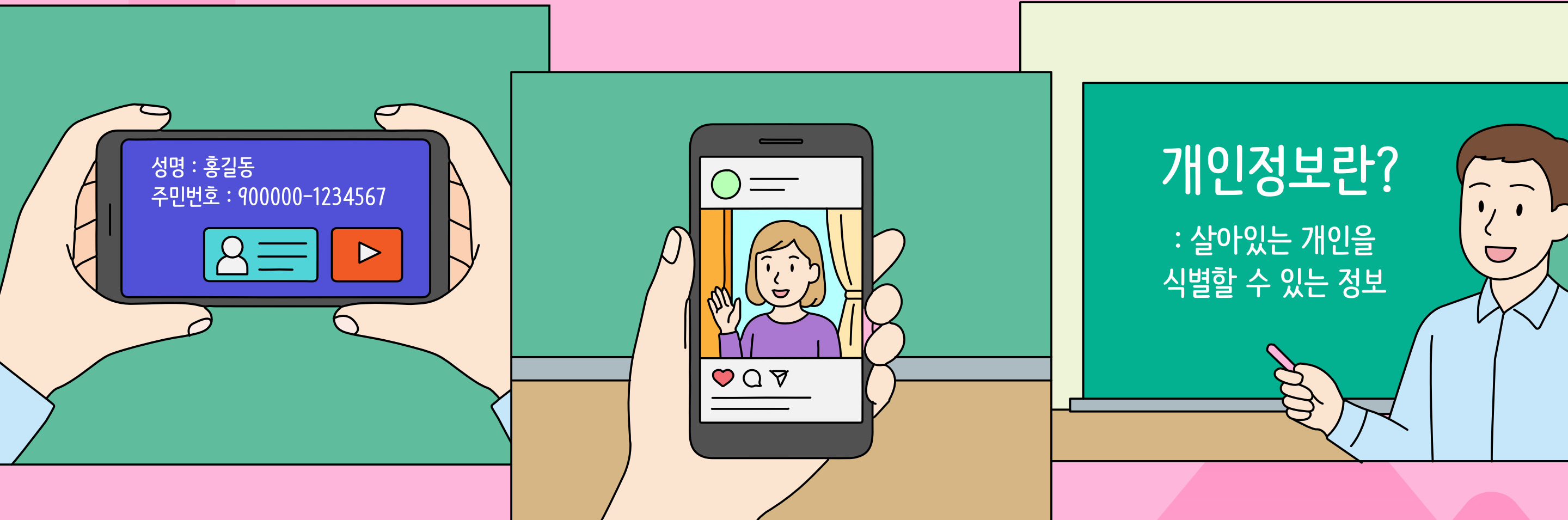
개인정보!

유퀴즈?



1

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
이름, 주민번호, 주소, 나이만을 이야기하나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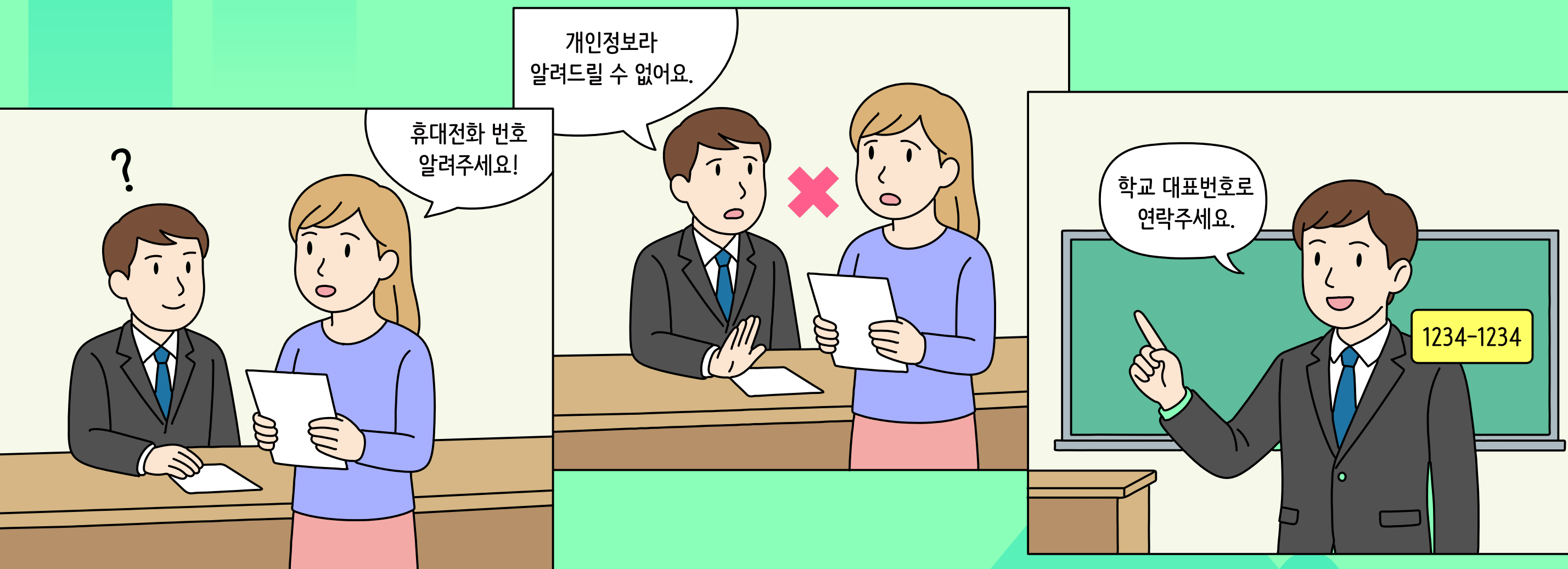
개인정보 보호법에서
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크게 3가지예요!

-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ex) 홍길동, 8001200-1xxx, 서울특별시 중구...
-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
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
ex) 00초등학교+학번(12345) 등
- 가명처리를 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·결합 없이는
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(가명정보)
ex) 학생이름을 제거하고 학번만 남긴 성적 데이터, 학생이름을 마스킹으로 바꾼 상담 데이터

관련 근거: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

2

학부모 또는 민원인이 교직원 개인정보 (이름, 휴대전화 번호, 소속 등)를 요청하는 경우 알려주어도 되나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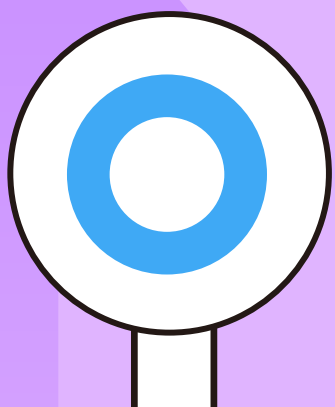
동의받은 후 알려줘야 합니다.

- 교직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은 개인 정보에 해당돼요
-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정보주체(교직원)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제공해요

※ 비상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
학교 대표번호(또는 사무실 번호)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

3

외부의 공격 및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
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
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?



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
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어요

- 교육기관은 1명이라도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의 유출등 발생시 상급기관을
경유하여 교육부로 신고!

- 단, ①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
- ② 민감정보, 고유식별정보가 1명 이상 유출등이 된 경우
- ③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(해킹)에 의해 유출등이 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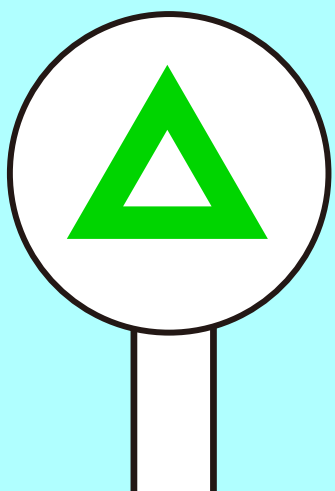
교육부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해요.

※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
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어요

관련 근거: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

4

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받을 경우 공개해도 될까요?



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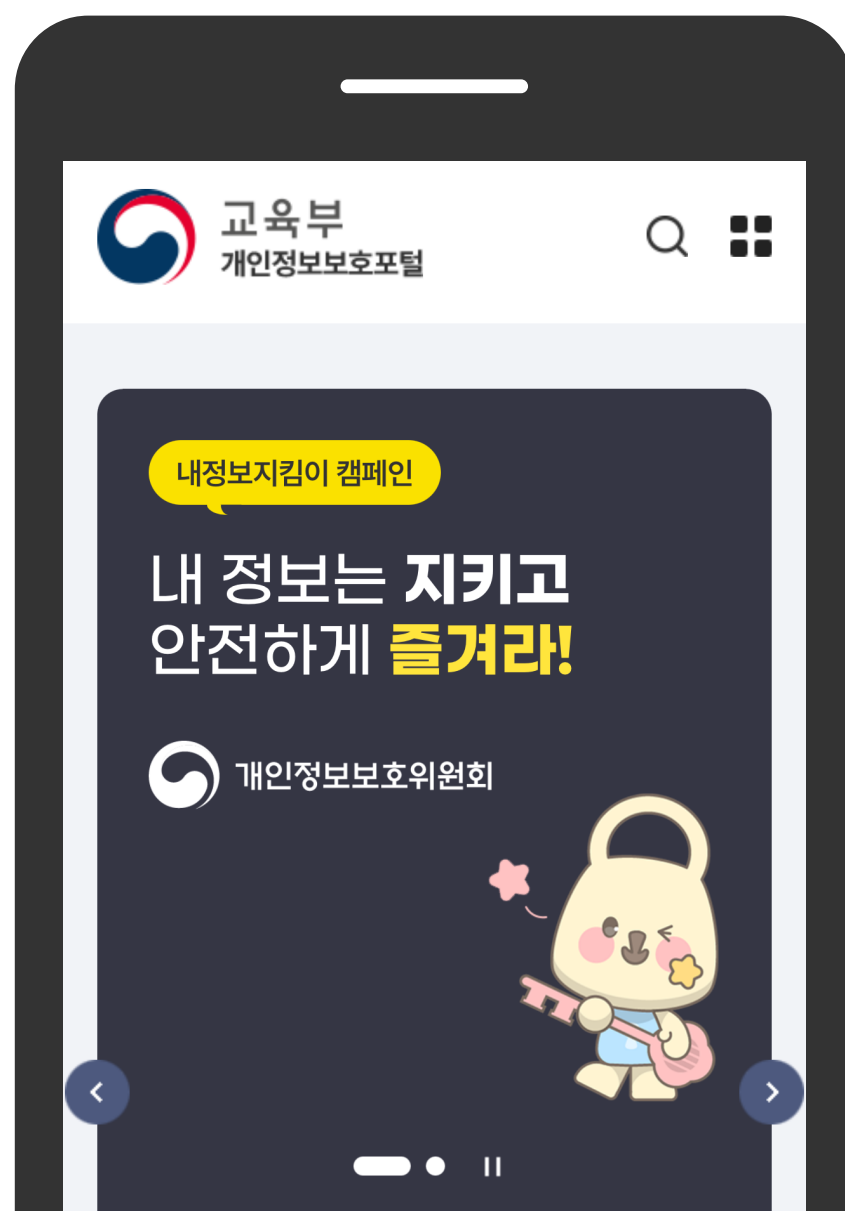
- 공개여부 및 그 범위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학교 등에서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결정해요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나, 법 제9조(비공개 대상 정보)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(사생활 및 자유 침해 등)에 해당할 경우 구체적 검토 후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합니다.

※ 정보공개청구의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.

관련 근거: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

개인정보 You Quiz에 참여하고 싶다면?

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



<https://privacy.moe.go.kr>

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의 **Q&A**와 **FAQ**를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